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2.10.10(수) 10:00

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전문위원 송장섭

**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9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4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명칭의 변경 : ‘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’ ⇒ ‘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’
- 나. 자매결연 체결시 「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을 따르도록 명시 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충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